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2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 내 배치할 수 있도록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

(안 제4조2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: 2025. 4. 7. ~ 2025. 4. 1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사무국”을 “사무국 또는 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<u>사무국</u> 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 ② · ③ (생 략)	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<u>사무국</u> <u>또는 위원회</u>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